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김 하 영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3년 제46차 회의에서 소규모 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을 향후 과제로 지정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에는 「사업자 등록 핵심 원칙에 대한 UNCITRAL 입법 지침서」를, 2021년에는 「유한책임조직에 대한 UNCITRAL 입법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UNCITRAL 제1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제35차 회의에서 「유한책임조직에 대한 UNCITRAL 입법 지침서」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2019년 UNCITRAL 제5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는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기반으로 소규모기업의 신용대출 및 회수 등에 관한 자료 초안을 작성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며, 금번 제36차 회의에서는 최초로 위 자료 초안(Note by Secretariat, 이하 “작업 문건”)¹⁾을 논의하였다.

제36차 작업반 회의는 2021. 10. 4.부터 9.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새롭게 선출된 크로아티아 출신 Sinisa Petrovic 의장의 주재하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회의결과 요지

작업 문건은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어려움, 신용대출 향상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소규모기업과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바, 작업반은 향후 전문가의 도

1) Access to credit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SMEs), A/CN.9/WG.I/WP.124, 28 July 2021.

움을 받아 Future Text(이하 “향후 문건”)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작업반은 금번 제36차 회의 및 차기 제37차 회의에서 작업 문건을 검토한 후, 수정된 작업 문건을 토대로 내년에 개최될 UNCITRAL 제55차 본회의에서 향후 문건의 작성 방향에 관한 지침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직 향후 문건의 형식(모델법, 입법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작업반은 제36차 회의 중 상당한 부분을 작업반 회의 진행 방향 및 작업 문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데 할애했으며, 그 외 작업 문건의 적용범위, 구조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차기 회의에서는 수정된 작업 문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II. 제36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1. 적용범위

작업 문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 중 중형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을 배제하고 소상공인(Micro, Small-sized Enterprises)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작업반은 중형기업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신용공여의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형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기업의 형태(자연인/법인)에 따라 신용 공여의 어려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 향후 문건의 형식 등

작업반은 향후 문건의 구체적인 형식(협약, 모델법, 입법지침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국가들은 법적 강제력이 약한 형식의 문건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금번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현재 작업 문건은 일관성 및 가독성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사무국은 이러한 작업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 문건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3.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의 중요성과 어려움

작업반은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법적 제도는 소상공인의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 조달의 종류에 따라 그 수혜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문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향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작업반은 소규모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작업 문건이 금융기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작업반은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문건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작업반은 신용조합, 모바일 은행 등 비공식적인 신용 제도를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법적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신용공여 방안

(1) 소규모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촉진

일부 국가들은 본 조항을 제2장의 일부가 아닌 단독의 장(individual chapter)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작업반은 사무국에게 향후 소규모기업을 위한 신용공여와 관련된 규제 일반과 법적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담보대출

작업반은 동산 담보대출 관련, 소규모기업의 신용 공여를 용이하게 하는 담보거래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작업 문건에 반영되어야 하며, 동산 담보대출의 범위를 디지털 자산 및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고,

효율적인 담보권 등기제도 수립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작업 문건의 동산 담보대출 관련 부분은 UNCITRAL 다른 문서 등을 참조하되, 향후 문건의 독자들이 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산의 종류와 관련하여 미국은 소규모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담보거래 제도는 (i) 담보권 설정 (ii) 담보권 집행 (iii) 담보권 순위 열람이 용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담보권 등기 관련해서는 (i) 비점유 담보권 등록의 필요성 (ii)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및 (iii) 효율적인 등기제도의 고안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작업 문건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작업반은 동산담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부동산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합의하였으며, 부동산 담보권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3) 소규모 기업 대출을 위한 개인보증

일부 국가들은 개인보증의 경우에도 담보대출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금융기관과 보증

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독립보증 관련해서는 “UN 독립보증 및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이 소개되었다.

(4) 신용보증 제도

작업반은 작업 문건에서 공공신용보증 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서로 균형있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신용보증의 부정적 측면은 (i) 대주들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ii) 납세자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iii) 특히 소상공인에게 있어 공공신용보증 제도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국가들은 적정성 기준을 통해 공적자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작업반은 사무국에게 각국의 적정성 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반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공지원 제도 및 국제보증제도 사례 등을 작업 문건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공적 신용보증 제도가 부재한 국가들의 경우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신용 보고

다수 국가들은 신용보고 관련하여 여성이 직면한 특별한 어려움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후 논의 후반에 비법률적인 요소(경제 또는 사회적 어려움)들을 작업 문건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표명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여성이 아닌 취약자 일반이 직면한 어려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작업반은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추가로, 신용등록(registry)과 신용조사(bureaux)의 용어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각국의 다양한 보고의무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6) 소규모기업을 위한 안전장치

작업반은 금융기관과 소규모 기업들 간의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낮은 이율이 반드시 금융기관의 높은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7)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작업반은 구조조정 및 신규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으로 인수합병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8) 금융 옴브즈만 및 기타 구제 제도

작업반은 금융 옴브즈만과 같은 좀 더 국가적 차원의 구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였고, 금번 회의 이후 각국 사례를 사무국에 송부하기로 합의하였다.

(9)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본 조항에서 제시된 은행상품 등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국가들은 핀테크와 빅테크 회사들이 무엇이며,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매출 채권 및 참고 영수증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이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소규모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작업반은 금융기관과 소규모 기업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채널 구축, 금융 지식 향상, 인식 제고,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III. 평가 및 소감

향후 문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금번 회의 결과 중형기업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바, 신용 공여에 대한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형기업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형태(자연인/법인)에 따라 신용 공여의 어려움 및 대출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주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회의에서는 작업 문건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차기 작업반의 진행 계획 이외에 유의미한 결정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우리 대표단은 소규모 기업이 직면한 장애 요소로 (i) 담보 부족, (ii) 자산 평가의 어려움, (iii) 과잉 담보, (iv) 담보권 실행의 곤란을 고려하면서 금번 회의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국내법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소규모기업 신용 공여 전반에 관한 법적, 정책적 부문이 주로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담보에 관한 사항이 향후 문건의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회의에서는 작업 문건에서 한국이 언급된 크라우드펀딩, 신용보증제도, 옴부

즈만 제도 등과 관련되는 사실관계 및 실무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이를 사무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 등을 추진하

는 관계부처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고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의 성안 과정에 반영해나갈지를 염두에 두고 차기 회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